

第260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國會事務處

2006年6月30日(金) 午前10時

議事日程

1. 제26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법관(김능환) 임명동의안
3. 대법관(박일환) 임명동의안
4. 대법관(안대회) 임명동의안
5. 대법관(이홍훈) 임명동의안
6. 대법관(전수안) 임명동의안
7. 국회사무총장(김태량) 임명승인안
8.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김창국) 임명동의안
9.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준식) 임명동의안
10.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완익) 임명동의안
1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박영립) 임명동의안
1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양대훈) 임명동의안
1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윤갑) 임명동의안
14.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지원) 임명동의안
15.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조세열) 임명동의안
16.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하원호) 임명동의안
17.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19.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 警察法 일부개정법률안
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 輕犯罪處罰法 일부개정법률안
23. 자전거利用活性化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7. 學校給食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8.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9.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비준동의안
30.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
31.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2.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3.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4.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附議된案件

1. 제260회국회(임사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3
2. 대법관(김능환) 임명동의안	3
3. 대법관(박일환) 임명동의안	3
4. 대법관(안대회) 임명동의안	3
5. 대법관(이홍훈) 임명동의안	3
6. 대법관(전수안) 임명동의안	3
7. 국회사무총장(김태량) 임명승인안(의장 제의)	3
8.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김창국) 임명동의안	3
9.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준식) 임명동의안	3
10.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완익) 임명동의안	3
1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박영립) 임명동의안	3
1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양태훈) 임명동의안	3
1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윤갑) 임명동의안	3
14.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지원) 임명동의안	3
15.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조세열) 임명동의안	3
16.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하원호) 임명동의안	3
○ 국회사무총장(김태량) 인사	7
17.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18.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 · 이계진 · 임태희 · 김성조 · 이명규 · 김정은 · 최연희 · 이주호 · 유승민 · 주호영 · 강길부 · 김명주 · 안상수 · 엄호성 · 정두언 · 이계경 · 진영 · 최구식 · 박형준 · 박재완 · 이진구 의원 발의)	8
19.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20. 警察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박기춘 · 임종인 · 김태홍 · 지병문 · 김재윤 · 이목희 · 김우남 · 심재덕 · 노현송 · 원혜영 · 이인기 의원 발의)	8
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박기춘 · 임종인 · 김태홍 · 지병문 · 김재윤 · 이목희 · 김우남 · 심재덕 · 노현송 · 원혜영 · 이인기 의원 발의)	8
22. 輕犯罪處罰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박기춘 · 임종인 · 김태홍 · 지병문 · 김재윤 · 이목희 · 김우남 · 심재덕 · 노현송 · 원혜영 · 이인기 의원 발의)	8
23. 자전거利用活性化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박기춘 · 임종인 · 김태홍 · 지병문 · 김재윤 · 이목희 · 김우남 · 심재덕 · 노현송 · 원혜영 · 이인기 의원 발의)	8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박기춘 · 임종인 · 김태홍 · 지병문 · 김재윤 · 이목희 · 김우남 · 심재덕 · 노현송 · 원혜영 · 이인기 의원 발의)	9
2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 · 엄호성 · 유승민 · 윤건영 · 박세환 · 김기현 · 임해규 · 이혜훈 · 박형준 · 박재완 · 이인기 · 이근식 · 고조홍 · 최구식 · 이계경 · 전여옥 · 안상수 · 고경화 · 이성권 · 이재오 · 신국환 의원 발의)	10
27. 學校給食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1
28.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12
29.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 · 태평양 무역협정 비준동의안	12
30.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 12
31.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6
32.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
33.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
34.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

(10시13분 개의)

○의장 임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6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 운영위원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0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대법관(김능환) 임명동의안
3. 대법관(박일환) 임명동의안
4. 대법관(안대희) 임명동의안
5. 대법관(이흥훈) 임명동의안
6. 대법관(전수안) 임명동의안
7. 국회사무총장(김태량) 임명승인안(의장 제의)
8.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김창국) 임명동의안
9.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준식) 임명동의안
10.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완익) 임명동의안
1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박영립) 임명동의안
1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양태훈) 임명동의안
1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윤

갑) 임명동의안

14.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지원) 임명동의안

15.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조세열) 임명동의안

16.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하원호) 임명동의안

(10시20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김능환)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박일환)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법관(안대희)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법관(이흥훈)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법관(전수안)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회사무총장(김태량) 임명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김창국)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준식)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완익)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박영립)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양태훈)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윤갑)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지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조세열)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하원호) 임명동의안,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 5건은 오는 7월 1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5인에 대한 후임 대법관을 각각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9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고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은 국회사무총장에 김태량을 임명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안한 것이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9건은 지난해 제정된 친일반민

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 재산조사위원회 위원 9인을 임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들 15인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각각 게재하여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관(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최병국 위원장 나오셔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法官(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任命同意에관한人事聽聞特別委員長 崔炳國** 존경하는 국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최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김능환) 임명동의안, 대법관(박일환) 임명동의안, 대법관(안대희) 임명동의안, 대법관(이홍훈) 임명동의안, 대법관(전수안) 임명동의안, 이상 5건의 임명동의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도덕성, 자질 및 전문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후보자들의 소신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네 차례의 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 본인의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학계,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3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 대법원의 바람직한 구성 방향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의를 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참고인 진술 청취 후 다시 후보자 본인을 상대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답변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법관으로서의 도덕성, 자질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5인의 후보자 중 4인은 판사로 재직하면서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업무 외에도 재판연

구관, 해외연수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안대희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일반 형사부뿐 아니라 특수부 검사로 근무하였고 조세 형사법이라는 저서가 있을 정도로 형사 문제 이외에도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법관이 부담하는 많은 사건에 비추어 충분한 재판 경력이 필요한바 다른 사안의 후보자와는 달리 안대희 후보자에 대하여서는 검사로서만 재직하여서 일반 민사재판 업무의 경력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후보자 공히 재산형성 과정과 병역 문제 및 가족관계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후보자들의 가치관 및 성향이 후보자에 따라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지 아니한가라는 질의에 대하여서는 각 후보자는 균형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형평성 있는 판결을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둘째, 대법원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하여서 후보자들은 현재의 경력법관 위주의 획일적 구성을 탈피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갖추는 것은 시대적·사회적 요구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대법원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제 사법부도 국민적 요구나 외부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쌓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셋째, 사법제도 개혁 및 사법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하여서는 그 존재 자체는 인정할 수 없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원도 불구속재판 확대, 국선변호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서 전관예우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헌법에 저촉되는 것이 우려되는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법원의 법령해석 통일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공판중심주의를 취함에 있어서 자력이 부

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선번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권위적인 법원의 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정모니터링 등을 기초로 법정운영요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두 기관의 판단이 모순되거나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법원 구성원에 대한 사법정책으로 재야 법조인의 법관 임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원 일반직 직원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법보좌관제도의 운영 결과를 검토하여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법원 구성원의 비리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윤리감사관실을 통하여 법관과 일반직을 가리지 않고 원칙대로 조사하여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넷째, 정치적·법적·사회적 현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하여 입법형식이 어떠한 동법의 기본취지에서 오·남용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본래 의도했던 내용은 어떤 형식이든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 이중국적자 등의 병역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한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하여서는 향후 어떤 형태로든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벌에 대한 처벌이 법논리보다 경제논리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양형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전인격적 판단일 수밖에 없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들의 진술에서는 후보자들이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능력, 자질 및 신망을 갖추었다고 진술하였고 향후 대법관 후보들의 청문회를 위해서는 그 후보자들의 판결성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법관(김능환) 임명동의안·대법관(박일환) 임명동의안·대

법관(안대회) 임명동의안·대법관(이홍훈) 임명동의안·대법관(전수안)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법관(김능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 대법관(박일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 대법관(안대회)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 대법관(이홍훈)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 대법관(전수안)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 (대법관(김능환·박일환·안대회·이홍훈·전수안)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경과를 보고한 대법관 임명동의안 5건과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9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건의 투표를 2장의 투표용지에 기록하는 연기식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김재홍 의원, 최철국 의원, 양형일 의원, 안홍준 의원, 유승민 의원, 이종구 의원, 최순영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5건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9건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각각에 대한 찬성 여부를 2장의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재하는 연기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란 안에 5건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9건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각각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0시33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정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0시56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4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4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법관(김능환)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가’만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38표로서 대법관(김능환)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박일환)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33표로서 대법관(박일환)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안대회)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196표로서 대법관(안대회)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이홍훈)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31표로서 대법관(이홍훈)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전수안)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17표로서 대법관(전수안)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총장(김태량) 임명승인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140표로서 국회사무총장(김태량) 임명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김창국)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194표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김창국)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준식)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07표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준식)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완익)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09표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완익)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박영립)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09표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박영립)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양태훈)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07표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양태훈)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윤갑)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05표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윤갑)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

지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07표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이지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조세열)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05표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조세열)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하원호)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06표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하원호)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국회사무총장(김태랑) 인사**

(11시51분)

○**의장 임채정**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임명을 승인해 주신 김태랑 신임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랑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오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두 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를 국회사무총장에 임명·승인해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우리 국회사무처가 조력하고 열심히 협력해서 의원님들이 국회생활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의정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52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영호 의원 나오셔서 심

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무주택 서민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용자 지원하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을 증액하려는 것이며, 동 자금에 대한 대출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재원으로서는 기금운용계획상의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기 위해 2조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액 소요재원 2조 원은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을 당초의 7조 5000억 원에서 9조 원으로 1조 5000억 원 증액 발행하고 신규로 주택저당증권을 5000억 원 발행하여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족한 수요추계로 인한 기금운용계획의 잦은 변경과 주택저당증권 발행을 통한 채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 기금이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들에게 주택구입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으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정** 그러면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3인

으로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 · 이계진 · 임태희 · 김성조 · 이명규 · 김정훈 · 최연희 · 이주호 · 유승민 · 주호영 · 강길부 · 김명주 · 안상수 · 엄호성 · 정두언 · 이계경 · 진영 · 최구식 · 박형준 · 박재완 · 이진구 의원 발의)

19.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56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8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과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주성영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국선변호인의 필요적 선정 사유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때를 추가하고, 둘째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과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특별사법경찰로서 환경·위생·보건·산림 분야 등의 범죄 수사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

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과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과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警察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박기춘 · 임종인 · 김태홍 · 지병문 · 김재윤 · 이목희 · 김우남 · 심재덕 · 노현송 · 원혜영 · 이인기 의원 발의)

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박기춘 · 임종인 · 김태홍 · 지병문 · 김재윤 · 이목희 · 김우남 · 심재덕 · 노현송 · 원혜영 · 이인기 의원 발의)

22. 輕犯罪處罰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박기춘 · 임종인 · 김태홍 · 지병문 · 김재윤 · 이목희 · 김우남 · 심재덕 · 노현송 · 원혜영 · 이인기 의원 발의)

23. 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박기춘 · 임종인 · 김태홍 · 지병문 · 김재윤 · 이목

희 · 김우남 · 심재덕 · 노현송 · 원혜영 · 이
인기 의원 발의)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
표발의)(강창일 · 박기춘 · 임종인 · 김태홍 ·
지병문 · 김재윤 · 이목희 · 김우남 · 심재
덕 · 노현송 · 원혜영 · 이인기 의원 발의)
(12시01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20항 경찰법 일부개
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
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경범죄처벌법 일부개
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도로
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강창일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창일 존경하는 국회의
장 그리고 여러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 북제주군갑 출신 강창
일 의원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한마디 드리겠습
니다.

내일 7월 1일부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태어
나게 됩니다. 또 4개 시 · 군이 2개로 통합되어
가지고 제주시 · 북제주군갑이라고 했는데 제주시
갑 · 을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법을 고쳐서 서귀포 · 남제주군도 서
귀포시로, 김재윤 의원 같은 경우도 서귀포시 이
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을 고치
려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
시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의 부수법률 개정안 5건에 대하
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찰법 일부개정
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 5건의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안된 제주특별법의 부수법안들입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들을 말씀드리면, 경찰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개념을 구
분하고 비상시 자치경찰의 통합 · 운영 등에 대하

여 규정하며,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교통법규 위
반 단속 등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권한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에게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
고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자전거이
용활성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도로
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제
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개정안에 대해 진지하게 심사한 결
과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수정의결 하였는데 이는 일부 자구
및 인용 조문이 잘못되어 수정한 것이며, 나머지
3건의 개정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警察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輕犯罪處罰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보고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 경찰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09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09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07인 중 찬성 197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엄호성·유승민·윤건영·박세환·김기현·임해규·이혜훈·박형준·박재완·이인기·이근식·고조흥·최구식·이계경·전여옥·안상수·고경화·이성권·이재오·신국환 의원 발의)

(12시10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25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임해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임해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제출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지금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영개발 주체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여 오던 것을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 원가의 100분의 50으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 원가의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개발지역 안에 필요한 학교를 적기에 신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하고 그밖의 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동 법률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함에 있어 부정행위의 유형을 조직적 부정행위와 단순한 부정행위로 구분하고 조직

적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 무효와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되 단순한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도록 하여 그 제재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심사 결과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차등화함에 있어 휴대폰, MP3와 같이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반입하는 등 사전에 수험생들에게 공지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그치는 경우와 그밖의 다른 부정행위를 구분하여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차등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식이라 판단되어 그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3인 중 찬성 197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고

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學校給食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2시15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27항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유기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유기홍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교육위원회의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영숙 의원, 강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과, 정장선 의원, 최순영 의원, 복기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급식 사고를 비롯하여 반복되는 급식 사고를 방지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급식 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탁급식에 관한 사항, 식재료·급식 위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처벌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급식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급식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급식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할 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식재료 선정 및 구매·검수 업무처럼 중요한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탁급식은 기존 계약 등을 고려하여 3년간만 계속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시설·설비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저소득층과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 모·부자 가정 등의 학생에게 확대되도록 했습니다.

셋째, 학교급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우수한 식자재 공급 및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학교급식의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그 품질관리 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고의 또는 과실로 급식사고를 유발한 자,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거부한 자 등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고 원산지 표시, 유전자 변형에 관한 표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밖에 식생활 지도와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學校給食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83인, 반대 7인, 기권 15

인으로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9.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비준동의안

30.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

(12시21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28항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진영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진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진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등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제260회 국회 제3차 및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인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및 스위스 간에 상품·서비스·투자·경쟁·정부조달·지적재산권 등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려는 것으로 FTA 본협정, 투자협정 및 3개 농업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FTA는 오일·가스·어류·의약품·시계·기계류·금융서비스·해운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소국들의 자유무역연합체로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미미한 점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FTA 체결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나 우리나라와 EFTA는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 산업의 피해와 그 조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쟁력 제고 등 교역자유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EFTA는 실질적으로 EU와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향후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적 정착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유엔 ESCAP 관내 개발도상국 간 특혜관세협정으로 1976년 발효한 방콕협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협정의 현 회원국은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및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이 됩니다.

본 동의안은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상품품목을 확대함으로써 동 협정 회원국, 특히 BRICs국가인 중국 및 인도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FTA 추진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농업 부문의 피해 없이 FTA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4년에 체결된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간주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 적용하고, 현행 협정을 남용하여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중국에 설립한 후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소득의 본국 송금 촉진은 물론 양국 간 투자, 교역 및 금융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이번 비준동의안은 단 하루 만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한 졸속적이고 부실한 동의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은 협정문과 열 장밖에 되지 않는 주요설명 내용이 제출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협정이 체결되었으면 그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을 하여야 함에도 경제적 효과라고 제시한 근거는 협상 개시 이전 2004년에 간단한 컴퓨터 작동을 통해 도출한 것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업종별 영향평가는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FTA 적용에 따라 관세행정 등 다양한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해서도 전

혀 고려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법의 영향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중요한 조약이 체결되었다면 그것이 기존의 국내법과 어떠한 관계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최소한 협정 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평가, 법률 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상식적 활동에 속합니다. 어떤 국가들은 고용·환경·지역 영향평가와 더불어 국내대책 역시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런 것과 비교할 때 정부 당국의 무성의·무책임감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상을 총괄하고 있는 외교통상교섭본부는 최소한 업종별 영향평가서와 법률 영향평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를 위해 협정을 추진하는 책임 있는 당국의 태도이고 국회 역시 그것을 토대로 비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과정과 자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해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와 EFTA가 무역 규모가 크지 않다고는 하나 EFTA는 상당한 선진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의 경우 100%를 양허하고 91.1%의 상품은 즉시 관세 철폐를 적용하고 있어 아무리 민감품의 관세 철폐를 7년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수산물 역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수산업이 강하기 때문에 치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민감품목은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88% 가량이 양허되고 냉동고등어 등 일부 민감품목은 쿼터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끼치게 될 경제적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서비스업 역시 빌딩청소업, 경영컨설팅, 전기용품 기술검사 및 분석 서비스를 신규로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서비스업은 제외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없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관련된 관련 상임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요청이나 보고서가 제출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신 상임위가, 우리 의원님

들께서 혹시 있으십니까? 상임위원회에조차도 이런 것들의 보고도, 검토 요청도 없이 본회의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행태입니다.

우리 헌법 제73조에는 대통령에게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과 협정 비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전 헌법 제60조제1항에는 바로 이 국가 간의 협정에 대한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우리 입법부에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비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정보를 알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도 이것도 거부하고, 비준뿐만 아니라 체결에 대한 동의권까지 우리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체결 과정과 협상 개시 선언에까지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타성적 관행에 의해서 전부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는데 점심식사 때가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자꾸만 소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한미 FTA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등과 불화가 심화되고 극대화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행태와 절차에서 우리 입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바깥에서는 ‘국회가 직무유기를 한다’, ‘식물 인간같이 되어 있다’ 이런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에 올라오는 한미 FTA 특위에 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정말 한미 FTA에 대해서는 각 17개 분과위에서 광범위한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19명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다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상임위원회별로 한미 FTA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토와 의견, 또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위가 구성이 되더라도 각 소위 형태로 상임위별로 소위가 구성되어서 그 소위를 포함한 광범위한 특위활동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EFTA 4개 국가의 협정내용 자체는 그렇게 한미 FTA처럼 엄청난 우리 국

가 경제나 서민·농민·노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용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입니다.

저는 한·EFTA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해 찬성토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잘 경청했습니다.

저는 강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 FTA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입장과 우려는 앞으로 협정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통하여 정부의 이런 노력을 지원해 주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강 의원님께서 영향평가보고서가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한·EFTA 간 FTA에 관해서는 2004년 8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EFTA 측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양자 간 FTA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분야별 자유화 가능성을 이미 검토를 했고,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EFTA 간의 FTA가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준동의안은 사실 작년 말 협정에 정부가 가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난 2월 17일 국회에 이미 제출되었습니다라는 우리 국회 측 사정으로 상임위에서의 심의가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당초 우리나라와 EFTA는 7월 1일 협정을 발효시킬 목표로 양측이 국내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라는 우리 측 사정으로 목표 일자를 다시 9월 1일로 연기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EFTA는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 내수시장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입니다. 또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도 불리해서 FTA 체결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사실

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민간연구기관의 전망에 의하면 협정이 발효될 경우 양측 간의 무역 규모가 약 14억 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EFTA 간에 FTA가 발효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첫째는 EFTA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서 가장 큰 선진 경제권입니다. 또 우리나라와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나라와의 FTA 체결을 통해서 우리 국내 산업의 조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무역자유화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EFTA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이라든지 해운·서비스 분야의 선진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국내 관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오히려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E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인 EU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교두보를 더 공고하게 할 수 있다, 또 우리 제품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유럽시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EU와 FTA를 추진할 경우 그것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라는 양허 내용을 볼 경우 우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약한 농업, 서비스, 수산물 분야에서는 현재 도하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미 양허하기로 결정한 수준을 크게 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EFTA 국가들로부터는 공산품과 수산물 또 가공 농산물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양허를 받았고, 기본 농산물 분야에서는 우리 양허 수준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양허를 받아냈습니다.

농업 분야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양측 간에 상호 민감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의 중요한 농산물은 대폭 협정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 양측의 지리적 거리를 감안한다면 우리

농업에 미치는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또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전체 400여 개 품목 중에서 360개 정도를 양허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민감 품목인 50개 품목은 협정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을 최대한 10년까지 설정한다든지 또는 관세 할당 쿼터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든지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7년 이후에 재협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이어서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EFTA의 역외가공 인정요건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북한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협정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FTA 협상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다자무역 규범이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FTA를 비롯한 지역주의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최근 FTA는 이런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정치·외교·안보 또 자원 확보의 목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 국가의 교역 비중도 전 세계 교역량의 반 이상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역을 하고 있는 주요국들이 거의 모두 FTA를 통해서 이들과의 교역을 더 늘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하락, 반덤핑 제소 등 매우 어려운 무역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역환경의 악화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도 주요 교역대상국들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8인 중 찬성 146인, 반대 25인, 기권 17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8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32.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2시47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31항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최철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최철국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최철국 의원입니다.

먼저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 2005년 12월 31일 동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행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행위를 바로잡고 진정한 한일, 한중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대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위원수는 15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2004년 7월 9일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 핵개발 관련사항 등 주요현안들에 대한 보고를 듣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 2005년 6월 30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한 단계 더 심화 발전시키고 거래의 염원인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평화통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위원수는 25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각각의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34.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2시52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33항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4항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안경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안경률 국회운영위원회의 안경률 의원입니다.

먼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국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적 파고를 넘기 위하여 국가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20개국 이상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한·미 간에 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FTA 추진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개방을 통한 시장 확대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농업분야 등 취약한 국내 각 부문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의 이익이 협상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동 협상 체결에 대한 보완 또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위원수는 19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2004년 7월 9일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부처 현황보고를 듣고 일자리 창출 정책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실시와 관련부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받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 2005년 6월 30일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완료되어 활동이 종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민간소비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대외경제변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 위원 수는 19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각각의 결의안에 대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2건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주승용 의원 외 264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주승용 의원 나오셔서 각각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전남 여수를 출신 주승용 의원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수정안,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의원 수를 각각 19인에서 20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교섭단체 간 합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주승용 의원 외 264인 발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주승용 의원 외 264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시 가까이 됐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토론하기에 적합한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특별대책위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한미 FTA의 체결을 전제하고 거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한번 위원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가 지금 현재 저는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한 시대, 대원군 시대라는 폐쇄적인 사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로 가면서 한 나라가 그대로 폐쇄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정도의 세계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대외관계를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이미 정립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두고 찬성이다 반대다 이 차원으로 빠져 버리면, 저는 각 나라의 이익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든지 거기에 찬성과 반대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흐름이 과연 그 차원으로 빠져 버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정립 또는 국회 차원의 정립이 먼저 선행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FTA라는 것은 산업의 각 분야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꼭 경기로 말하면 5종 경기의 내용과 같습니다. 어느 분야는 수영은 잘하지만 자전거타기는 잘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로 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결정돼야 될 내용이지 어떤 분야에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 가기 시작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구가 공존하기 위해서 또 각 나라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장과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전제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열등한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내놓아야 될 시점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FTA를 체결하고 나면 우리나라에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가 이 점이 주요한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이기주의, 각국의 자국이기주의에 빠져서 FTA가 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전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는 크게 유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미 FTA가 생길 때 또 특위를 구성하고, 또 영국과 FTA를 체결을 하면 또 특위를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FTA에 대한 것들이

국회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분적인 한미 FTA라는 그 체결을 전제해서 특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자유무역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이쯤 되면 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산업 분야는 어떻고, 농업 분야는 어떻고, 제조업 분야는 어떻고 이렇게 지금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국가의 장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미국 같은 데에서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면서 국회에서 방향과 내용을, 일정을 다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헌법상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그걸 어떻게 비준할 것이냐 이 문제만 논의하는 하위적인 개념으로 빠지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처럼 이 FTA가 체결이 되고 나면 우리는 망한다든지, 어려움에 빠진다 이렇게 저는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FTA에 찬성을 하시는 의원이든, 반대를 하시는 의원이든 저는 전부 나름대로 애국적 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린 우리당도 그렇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자유주의 기치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가 폐쇄적으로 나갈 수 있는냐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자유주의야말로 실행하는 정신이다 그 차원에서 이 FTA 문제도 논의해야 된다, 어느 것들은 정당이 자유주의로 나갔다가 어떤 것들은 또 폐쇄주의, 대립주의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 온 국민이 그 속에서 이기주의에 빠져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한미 FTA 체결을 전제로 한 이 대책기구 구성은 너무도 속이 뻘히 들여다보이는 대책기구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가이익을 전제한다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FTA 종합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반대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동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주승용 의원 외 264인이 발의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동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외 264인이 발의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주승용 의원 외 264인이 발의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들 안전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60회 임시국회 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제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의장단 및 위원장 선거와 각 위원 선임 등을 통하여 제17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인사에 관한 주요 안전과 학교급식법 등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는 소관부처의 업무현황 보고를 통하여 후반기 임기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내실있게 시작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후반기 첫 임시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인사에서도 밝혔듯이 국회는 대결의 장이 아니라 통합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주의 정신은 배격이나 배타가 아니라 인정과 포용이며 대화와 타협입니다. 여야가 정책으로 경쟁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문화와 관행이 정착될 때 의회의 권위와 전통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7대 국회 들어 국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신장되었으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가 않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구호도 국민보다 앞설 수 없고 어떠한 대의명분도 국민생활을 우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말기에 이루어진 여야 간의 합의 정신이 앞으로도 계속 존중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기대합니다.

하반기를 맞이하여 의원님들 모두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더욱 심기일전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제260회국회(임시회) 의사일정

2006. 6. 19~6. 30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6. 19.(월) 14:00	1. 국회의장·부의장 선거 2.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화) 14:00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6. 20.(화) 14:00	부 개정규칙안 2. 상임위원장 선거 3.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4. 윤리특별위원장 선거	※ 정보위원장 제외
6. 21.(수) ~ 6. 29.(목)	본회의가 개의되지 아니함 (9일간)	○위원회 활동 -결산·예비비 및 기금결산 예비심사 -법률안 등 안건심사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대법관 인사 청문회
6. 30.(금) 10:00	1. 제26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법관 임명동의안 3. 국회사무총장 임명 승인안 4.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5. 기타 안건처리	○6. 19.~6. 30. (12일간)

표 결 결 과

연번		가	부	권	무 효	총투표수
1	대법관(김능환) 임명동의안	238	7	2	2	249
2	대법관(박일환) 임명동의안	233	12	2	2	249
3	대법관(안대회) 임명동의안	196	46	4	3	249
4	대법관(이홍훈) 임명동의안	231	15	1	2	249
5	대법관(전수안) 임명동의안	217	29	1	2	249
6	국회사무총장(김태량) 임명승인안	140	92	14	3	249
7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김창국) 임명동의안	194	49	3	3	249
8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이준식) 임명동의안	207	38	2	2	249
9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완익) 임명동의안	209	37	2	1	249
10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박영립) 임명동의안	209	37	2	1	249
1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양태훈) 임명동의안	207	39	2	1	249
1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이윤갑) 임명동의안	205	41	2	1	249
1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이지원) 임명동의안	207	39	2	1	249
14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조세열) 임명동의안	205	41	2	1	249
15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하원호) 임명동의안	206	38	3	2	249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동채

정문현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반대 의원(1인)

김영선

기권 의원(1인)

박재완

(정봉주 의원석 버튼 조작착오. 실제 투표 의원 206인임. 안명옥 의원석 버튼 오작동. 실제 찬성의원 204인, 기권 의원 1인임.)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3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기홍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김희정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이기우	이낙연	이병석	이상득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박영선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성호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우제창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조배숙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홍재형	홍준표	황진하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반대 의원(1인)

이상민

기권 의원(2인)

안택수 이미경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3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노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전병헌

○警察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6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명 자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기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선	김 회 정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중 복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기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선	김 회 정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병 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병 석
이 승 회	이 상 민	이 성 구	이 승 회
이 용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회
이 인 기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종 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종 결
이 한 구	이 종 구	이 주 호	이 한 구
임 인 배	이 해 봉	이 혜 훈	임 인 배
임 해 규	임 종 석	임 종 인	임 해 규
장 향 숙	장 경 수	장 복 심	장 향 숙
정 문 현	전 병 현	정 갑 윤	정 문 현
정 장 선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장 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반대 의원(1인)

이인기

기권 의원(3인)

김병호 안택수 최용규

○輕犯罪處罰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제창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선교 허천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김재원

기권 의원(2인)

단병호 우윤근

○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197인)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병석 이상득 이시종 이영순
 이성권 이승희 이윤성 이은영
 이용희 이원영 이재웅 이재창
 이인기 이인영 이주호 이진구
 이종걸 이종구 이혜훈 이호웅
 이한구 이해봉 임종석 임채정
 임인배 임종수 장복심 장윤석
 임해규 장경수 장갑윤 정동채
 장향숙 전병헌 정의용 정의화
 정문헌 정성호 정진석 정청래
 정장선 정중복 조배숙 조성래
 정희수 제종길 조승용 주호영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채수찬
 지병문 진수희 진영 최병국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인기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5인)
 강기정 박찬석 서갑원 안병엽
 안영근
기권 의원(5인)
 김형주 유재건 이영호 정화원
 한광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7인)

장기갑 장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유기홍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근현
 이병석 이상득 이시종 이영순
 이성권 이승희 이윤성 이은영
 이용희 이원영 이재웅 이재창
 이인기 이인영 이주호 이진구
 이종걸 이종구 이혜훈 이호웅
 이한구 이해봉 임종석 임채정
 임인배 임종수 장복심 장윤석
 임해규 장경수 장갑윤 정동채
 장향숙 전병헌 정의용 정의화
 정문헌 정성호 정진석 정청래
 정장선 정중복 조배숙 조성래
 정희수 제종길 조승용 주호영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채수찬
 지병문 진수희 진영 최병국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인기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태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03인)****찬성 의원(19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영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반대 의원(2인)

김광원 이상민

기권 의원(4인)

박계동 이영호 이주호 채수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07인)****찬성 의원(20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병두 민병석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승환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형준
 박영선 박찬석 박찬숙 박원우
 박희태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해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동채 정문현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채 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이한구

○學校給食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18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병두
 민병석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승환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영선 박찬석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엽 안경률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군현 이기우
 이병석 이성권 이성구 이성민
 이영순 이영호 이윤성 이은영
 이재웅 이재창 이진구 임인배
 임인배 임해규 임채정 임해규
 장향숙 정문현 정장선 정화원
 정동채 정의화 정청래 조성래
 조배숙 주승용 주호영 주호영
 채수찬 최병국 최인기 한광원
 한광원 한태열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7인)

구논회	김용갑	박찬숙	박희태
이성구	이승희	이한구	

기권 의원(15인)

고경화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박형준	심재철	윤건영
이상득	이재창	이종구	장윤석
정희수	최순영	한광원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길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용규	최재성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5인)

강혜숙	김광원	김낙성	김애실
김영덕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류근찬	박세환	송영선
안홍준	이광철	이승희	이영호
이혜훈	임종인	정청래	주호영
최순영	최인기	한광원	허천
홍문표			

기권 의원(17인)

강기갑	고조홍	고진화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춘진	단병호
박찬숙	배일도	손봉숙	신상진
이영순	이한구	정화원	천영세
현애자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46인)

강기정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용갑	김원기	김재홍	김정훈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희선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찬석	박형준	박희태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신국환
신기남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 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용갑	김원기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희선	김희정
노웅래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일도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근현	이근식
이낙연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찬성 의원(18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용갑	김원기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희선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찬석
박형준	박희태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성권	이병석
이성구	이상득	이영순	이승희
이영순	이윤성	이영호	이용희
이재웅	이인영	이재창	이인기
이주호	이종구	이종걸	이종걸
이호웅	이혜훈	이해봉	이해봉
임채정	임종인	임종석	임종석
장윤석	장복심	장경수	장경수
정동채	정갑윤	전병헌	전병헌
정장선	정의화	정문헌	정의용
정희수	정청래	정종복	정진석
조정식	조성래	제종길	조배숙
지병문	주호영	주성영	주승용
천영세	채수찬	진수희	진영
최성	최병국	최구식	최규식
최재성	최인기	최순영	최용규
한선교	한병도	최철국	한광원
홍문표	현애자	허천	
황진하	황우여	홍재형	

반대 의원(1인)

김재원

기권 의원(3인)

손봉숙 이광철 정화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
한 협정의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90인)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정 화 원
기권 의원(3인)
 김 재 경 박 찬 숙 배 일 도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문 현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중 복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기권 의원(2인)
 단 병 호 안 경 릉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6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홍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원 기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희 선
 김 희 정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배 일 도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심 재 엽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제 세 우 윤 근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주 호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해 규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6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홍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원 기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희 선
 김 희 정 노 응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배 일 도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심 재 엽
 안 경 릉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제 세 우 윤 근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병 석 이 상 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반대 의원(1인)

김용갑

기권 의원(2인)

송영선 안택수

(김희선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찬성 의원 176인, 기권 의원 2인임.)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상득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동채
 정문헌 정병국 정의용 정의화
 정진석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반대 의원(1인)

배일도

기권 의원(1인)

김용갑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주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환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애실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홍
 김태환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박승환	박영선	박찬석	박찬숙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박형준	박희태	배일도	서갑원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엽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석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원영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전병헌	정동채	정문현	정병국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진석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조성래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이경숙	이광철	이계경	이계진
한선교	허천	한애자	홍문표	이광재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이근식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기권 의원(1인)

김성조

○출석 의원(26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정 장 선	정 중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찬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청가 의원(20인)

김 성 곤	김 우 남	김 원 웅	김 홍 일
노 회 찬	박 성 범	오 영 식	유 시 민
유 정 복	윤 두 환	이 명 규	이 상 경
전 여 옥	정 몽 준	정 봉 주	정 세 균
조 경 태	최 규 성	최 연 희	한 명 숙

○출석 국무위원

부 총 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진 표
법 무 부 장 관	천 정 배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이 용 섭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추 병 직

○상임위원 선임

위원회명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김한길(정) 김현미(정) 노웅래(문) 박기춘(행) 선병렬(법) 이화영(통) 조일현(농) 주승용(건) 정성호(건) 최용규(환) 최철국(산)	열린우리당	2006. 6. 20
	김영덕(농) 김충환(문) 신상진(환) 안경률(행) 이재오(정) 임해규(교) 주호영(교) 정희수(건) 진수희(정)	한나라당	
	권영길(통) 이낙연(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법제사법	김동철 문병호 선병렬 이상경 이상민 이용희 이종걸 임종인	열린우리당	2006. 6. 20
	김명주 나경원 박세환 안상수 주성영 최병국	한나라당	
	노회찬 박성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정 무	김영주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박병석 서혜석 신학용 유선호 이원영 지병문 천정배	열린우리당	2006. 6. 20
	고진화 김애실 김양수 김정훈 박계동 안택수 이계경 이재오 이종구 진수희	한나라당	

○출석 정부위원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 규 형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김 태 량
입 법 차 장 상 원 종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
별위원회

위 원 장 조 일 현

(2006. 6. 19)

대법관(김능환·박일환·안대회·이홍훈·전수
안)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 원 장 최 병 국

(2006. 6. 22)

○상임위원장 직무대리 지정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임 종 석

2006년 6월 30일 출국 시부터 7월 3일 입
국 시까지(4일간)

(2006. 6. 28)

위원회명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이승희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재정경제	강봉균 문석호 박명광 박영선 송영길 오제세 우제창 이계안 이목희 이미경 정덕구 채수찬	열린우리당	2006. 6. 20
	서병수 엄호성 원희룡 유승민 윤건영 이한구 이혜훈 임태희 정의화 최경환	한나라당	
	김효석 신국환 심상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통일의교통상	김원기 김원웅 문희상 배기선 이해찬 이화영 임종석 장영달 정동채 정의용 최 성 최재천	열린우리당	2006. 6. 20
	고홍길 권영세 김덕룡 김무성 김용갑 남경필 박 진 박종근 박희태 이해봉 진 영	한나라당	
	권영길 정몽준 한화갑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국 방	김명자 김성곤 김진표 박찬석 안영근 원혜영 유재건 이근식 조성태	열린우리당	2006. 6. 20
	고조흥 공성진 김학송 송영선 이상득 이성구 황진하	한나라당	
	이인제 이정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행정자치	강창일 구논회 김낙순 김부겸 노현송 박기춘 심재덕 양형일 유인태 이인영 최규식 홍미영	열린우리당	2006. 6. 20
	권경석 김기춘 김정권 박근혜 안경률 유기준 이상배 정갑윤 정두언 황우여	한나라당	
	최연희 최인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교 육	김교홍 김영춘 민병두 안민석 유기홍 이경숙 이은영 정봉주 최재성	열린우리당	2006. 6. 20
	권철현 김영숙 이군현 이주호 임해규 정문현 주호영	한나라당	
	김홍일 최순영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과학기술 정보통신	강성종 김근태 변재일 신기남 안병엽 유승희 유시민 이석현 홍창선	열린우리당	2006. 6. 20
	강재섭 김영선 김태환 김희정 서상기 심재엽 임인배 전여옥 허태열	한나라당	
	류근찬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문화관광	강혜숙 김재윤 김재홍 김희선 노웅래 우상호	열린우리당	2006. 6. 20

위원회명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윤원호 이광재 이광철 전병헌 정청래 조배숙	한나라당	
	김충환 김학원 박찬숙 박형준 이계진 이재웅 장운석 정병국 정종복 최구식		
	손봉숙 천영세		
농림해양수산	김우남 우윤근 이영호 정세균 조경태 조일현 최규성 한광원	열린우리당	2006. 6. 20
	권오을 김광원 김영덕 김재원 김형오 이강두 이방호 홍문표	한나라당	
	강기갑 김낙성 신중식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산업자원	김덕규 김태년 김형주 노영민 서갑원 염동연 오영식 우제항 이시중 조정식 최철국	열린우리당	2006. 6. 20
	곽성문 김기현 김성조 박순자 심재철 이규택 이명규 이병석 이윤성	한나라당	
	권선택 이상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보건복지	강기정 김선미 김춘진 김태홍 백원우 양승조 윤호중 이기우 장복심 장향숙	열린우리당	2006. 6. 20
	고경화 김병호 문 희 박재완 안명옥 전재희 정형근 정화원	한나라당	
	김종인 현애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환경노동	김종률 우원식 이강래 제종길 조성래 최용규 한명숙	열린우리당	2006. 6. 20
	배일도 신상진 안홍준 이경재 정진섭 한선교 홍준표	한나라당	
	단병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건설교통	강길부 문학진 박상돈 서재관 유필우 이호웅 장경수 정성호 정장선 주승용 한병도 홍재형	열린우리당	2006. 6. 20
	김석준 김재경 박승환 유정복 윤두환 이성권 이인기 이재창 이진구 정희수 허 천	한나라당	
	이낙연 이영순 정진석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여성가족	김영주(정) 박영선(재) 윤원호(문) 윤호중(보) 이기우(보) 이인영(행) 제종길(환) 홍미영(행)	열린우리당	2006. 6. 20
	고경화(보) 김기현(산) 김영숙(교) 김충환(문)	한나라당	

위원회명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문 희(보) 안명옥(보) 전여옥(과)		
	손봉숙(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명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특별	김낙순(행) 김동철(법) 김선미(보) 김재윤(문) 김현미(정) 노영민(산) 문병호(법) 민병두(교) 박상돈(건) 안병엽(과) 안영근(국) 오영식(산) 우원식(환) 우제창(재) 윤호중(보) 이강래(환) 이상경(법) 이상민(법) 이영호(농) 이종걸(법) 임종석(통) 임종인(법) 조경대(농) 최규성(농)	열린우리당	2006. 6. 20
	권경석(행) 김명주(법) 김병호(보) 김영덕(농) 김태환(과) 김희정(과) 나경원(법) 박계동(정) 박세환(법) 박재완(보) 신상진(환) 심재철(산) 안홍준(환) 윤건영(재) 이경재(환) 이진구(건) 이한구(재) 장윤석(문) 정갑윤(행) 정진섭(환) 주호영(교)	한나라당	
	노회찬(법) 류근찬(과) 신중식(농) 심상정(재) 최인기(행)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윤리특별	김명자(국) 김재홍(문) 문병호(법) 박기춘(행) 박명광(재) 서재관(건) 이은영(교) 최재성(교)	열린우리당	2006. 6. 20
	김영덕(농) 김재경(건) 김충환(문) 서병수(재) 이인기(건) 주호영(교)	한나라당	
	강기갑(농)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대법관(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김동철 김영주 이상경 이상민 이종걸 임종인	열린우리당	2006. 6. 22
	김명주 김영덕 김재경 주호영 진 영 최병국	한나라당	
	이상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법제사법	김동철	열린우리당	2006. 6. 21
	주성영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	김우남	열린우리당	
	홍문표	한나라당	
환경노동	우원식	열린우리당	
	배일도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	이종걸	열린우리당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재정경제	박계동	한나라당	2006. 6. 22
	문석호	열린우리당	
통일외교통상	엄호성	한나라당	
	임종석	열린우리당	
국 방	진 영	한나라당	
	안영근	열린우리당	
행정자치	김학송	한나라당	
	노현송	열린우리당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유기준	한나라당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교육	유기홍	열린우리당	2006. 6. 22	
	임해규	한나라당		
산업자원	서갑원	열린우리당		
	김기현	한나라당		
대법관(김능환·박일환·안대회·이홍훈·전수안)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이종걸	열린우리당		
	진영	한나라당		
정무	신학용	열린우리당		2006. 6. 26
	이계경	한나라당		
과학기술 정보통신	변재일	열린우리당		
	김태환	한나라당		
문화관광	김재홍	열린우리당		
	최구식	한나라당		
보건복지	장기정	열린우리당		
	박재완	한나라당		
건설교통	주승용	열린우리당		
	윤두환	한나라당		
환경노동	안홍준	한나라당		
여성가족	홍미영	열린우리당	2006. 6. 27	
	고경화	한나라당		
국회운영	최용규	열린우리당	2006. 6. 29	
	안경률	한나라당		
정보	조일현	열린우리당		
윤리특별	박기춘	열린우리당		
	김중환	한나라당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보	임종인	문희상	열린우리당	2006. 6. 21
	장영달	원혜영		
	정의용	조일현		
	조성태	박명광		
	최재천	선병렬		
여성가족	이인영	유승희	열린우리당	2006. 6. 22
	제종길	장항숙		2006. 6. 26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	------	------	------	-----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대법관(김능환·박일환·안대회·이홍훈·전수안)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김명주	김기현	한나라당	2006. 6. 22
	임종인	최재천	열린우리당	2006 6. 23

○의안 제출

船主相互保險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6. 20 정부 제출)

6월 21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血液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문희 의원 대표발의)

(2006. 6. 20 문희·김춘진·황진하·박재완·

황우여·이인기·김영선·박찬숙·이해봉·박상돈·엄호성 의원 발의)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6. 20 정부 제출)

6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6. 20 정부 제출)

6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영달 의원 대표발의)

(2006. 6. 21 장영달·김춘진·김재홍·최규성·배기선·강혜숙·김재윤·유선호·최재성·이광철·강창일·이호웅·배일도·백원우·이은영·김태년·선병렬·신학용·최성·조성래·임종인·신중식·김태홍·양승조·한화갑·김홍일·한명숙 의원 발의)

6월 2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발의)

(2006. 6. 21 정희수 의원 외 122인 발의)

6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6. 6. 21 오제세·김영선·노현송·이해봉·심재덕·안상수·신학용·박명광·박상돈·장영달 의원 발의)

6월 22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06. 6. 22 안홍준·이성권·고홍길·이인기·서병수·김태환·김명주·김무성·박승

환 · 한선교 · 박세환 · 심재엽 · 이성구 · 김정권 · 이주호 · 김재원 · 유기준 · 문희 · 정갑윤 · 김양수 · 허천 · 최구식 · 정희수 의원 발의)

6월 2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地方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06. 6. 22 이경숙 · 김희선 · 장영달 · 선병렬 · 우원식 · 정봉주 · 유선호 · 강기정 · 노영민 · 최규성 · 우상호 의원 발의)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2006. 6. 22 정형근 · 이인기 · 박재완 · 이영호 · 정화원 · 문희 · 안명옥 · 신상진 · 김재원 · 이혜훈 · 김선미 · 장복심 · 공성진 · 김양수 · 김학원 · 이재오 · 김병호 · 정진섭 · 유기준 · 허천 · 이성구 · 최병국 · 서상기 · 심재엽 · 김석준 · 김형오 · 안경률 · 주호영 · 이진구 · 정희수 · 윤건영 · 홍문표 · 이강두 · 엄호성 · 이상득 의원 발의)

6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技術移轉促進法 전부개정법률안

(2006. 6. 22 정부 제출)

6월 26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

(2006. 6. 22 심재엽 · 정문헌 · 이혜훈 · 신학용 · 정진섭 · 유기준 · 김재원 · 이성권 · 안상수 · 박상돈 · 심재덕 · 김충환 · 김영선 · 이시종 · 이인기 · 황우여 · 이윤성 · 엄호성 · 유필우 · 박세환 의원 발의)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

(2006. 6. 22 심재엽 · 정문헌 · 이혜훈 · 신학용 · 정진섭 · 유기준 · 김재원 · 이성권 · 안상수 · 박상돈 · 심재덕 · 김충환 · 김영선 · 이시종 · 이인기 · 황우여 · 이윤성 · 엄호성 · 유필우 · 박세환 의원 발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광 의원 대표발의)

(2006. 6. 23 박명광 · 김태홍 · 김춘진 · 박상돈 · 김명자 · 엄호성 · 노현송 · 신중식 · 정의용 · 이혜훈 · 이근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국민의 고소사건 재정심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06. 6. 22 장윤석 · 유기준 · 김재원 · 이해봉 · 이인기 · 주호영 · 엄호성 · 진수희 · 이계경 · 정종복 · 박재완 의원 발의)

6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2006. 6. 23 손봉숙 · 김재윤 · 이낙연 · 최인기 · 강창일 · 김효석 · 이정일 · 신중식 · 강혜숙 · 류근찬 · 이인기 · 이상열 · 김홍일 · 김낙성 · 이근식 의원 발의)

6월 26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6. 23 정부 제출)

6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商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06. 6. 26 유기준 · 김명주 · 김영선 · 박재완 · 박세환 · 황우여 · 엄호성 · 이인기 · 김재원 · 장복심 · 정동채 · 공성진 · 정성호 의원 발의)

6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6. 6. 26 심재철 · 안상수 · 황우여 · 이해봉 · 전여옥 · 이재창 · 김정권 · 이인기 · 서병수 · 전재희 의원 발의)

6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2006. 6. 26 이상배 · 김광원 ·곽성문 · 유기준 · 주성영 · 이계경 · 김재원 · 임인배 · 최경환 · 박재완 · 심재철 의원 발의)

6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2006. 6. 26 이윤성 · 안상수 · 이인기 · 엄호성 · 김태환 · 윤두환 · 배일도 · 안명옥 · 정종복 · 황진하 의원 발의)

6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2006. 6. 26 이윤성 · 안상수 · 이경재 · 이해봉 · 이인기 · 윤두환 · 엄호성 · 김태환 · 안명옥 · 배일도 · 고조홍 의원 발의)

6월 2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戰鬪警察隊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2006. 6. 26 이윤성 · 안상수 · 이경재 · 이해

봉 · 이인기 · 윤두환 · 엄호성 · 김태환 · 안명옥 · 고조홍 의원 발의)

6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2006. 6. 27 공성진 · 유기준 · 정문헌 · 안택수 · 진수희 · 정의용 · 고조홍 · 이인기 · 정동채 · 이성구 · 정성호 · 심재철 의원 발의)

6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6. 6. 27 신상진 · 김재원 · 박재완 · 엄호성 · 박세환 · 김애실 · 양형일 · 정문헌 · 박상돈 · 이계진 · 이해봉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6. 6. 27 이계경 · 엄호성 · 신학용 · 김무성 · 김영선 · 심재철 · 손봉숙 · 진수희 · 김재윤 · 이상배 · 김석준 · 이성권 의원 발의)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6. 6. 28 안상수 · 황우여 · 전여옥 · 박세환 · 이계경 · 엄호성 · 이해훈 · 심재철 · 유기준 · 이인기 · 김재원 · 이해봉 · 이재창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9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6. 6. 27 이명규 · 권경석 · 김명주 · 김성조 · 김재원 · 김정훈 · 박재완 · 엄호성 · 이낙연 · 이인기 · 이재웅 · 전여옥 의원 발의)

6월 29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非常對備資源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6. 6. 27 이계경 · 엄호성 · 김애실 · 신학용 · 박재완 · 김영선 · 심재철 · 손봉숙 · 진수희 · 이상배 · 김석준 · 이성권 의원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6. 6. 27 이계경 · 엄호성 · 신학용 · 김영선 · 심재철 · 박명광 · 진수희 · 이상배 · 김석준 · 이성권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9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2006. 6. 27 김성조 · 광성문 · 권경석 · 권오을 · 김광원 · 김석준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

부 · 김태환 · 김학송 · 박세환 · 서재관 · 심재엽 · 안경률 · 안택수 · 윤두환 · 이명규 · 이병석 · 이상배 · 이상열 · 이인기 · 이해봉 · 임인배 · 장윤석 · 정갑윤 · 정종복 · 정희수 · 조경태 · 주호영 · 홍문표 의원 발의)

수도권과밀지역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2006. 6. 27 김성조 · 광성문 · 권경석 · 권오을 · 김석준 · 김재원 · 김태환 · 서상기 · 안택수 · 엄호성 · 유승민 · 이명규 · 이상배 · 이인기 · 이해봉 · 임인배 · 정갑윤 · 주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9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6. 6. 28 박찬숙 · 엄호성 · 안상수 · 김재원 · 박재완 · 정성호 · 정동채 · 심재철 · 이인기 · 이시중 · 박세환 의원 발의)

6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2006. 6. 28 임인배 · 김병호 · 김석준 · 김태환 · 박형준 · 엄호성 · 이상배 · 이성권 · 이인기 · 정화원 의원 발의)

6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06. 6. 29 민병두 · 오영식 · 강창일 · 윤원호 · 김재윤 · 이광철 · 최재천 · 강혜숙 · 김현미 · 이은영 · 안민석 · 이인영 의원 발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한 · 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26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상 3건 2006. 6. 29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豫算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6. 6. 29 심재철 · 이재웅 · 이인기 · 김기현 · 고조홍 · 신상진 · 유기준 · 김정권 · 김재경 · 서병수 의원 발의)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사무총장(김태량) 임명승인안

(2006. 6. 29 의장 제의)

對外貿易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6. 29 정부 제출)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06. 6. 29 박순자·윤건영·문희·김희정·박재완·심재엽·곽성문·이규택·박찬숙·이병석·전여옥·진수희·김영숙·장운석·이계경 의원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觀光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06. 6. 29 김재윤·민병두·엄호성·김영선·김동철·이성권·신학용·안민석·박상돈·심재덕·강기정 의원 발의)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學校給食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06. 6. 29 교육위원장 제출)

2005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2006. 6. 29 정부 제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겠음

○의안 심사

대법관(김능환) 임명동의안

대법관(박일환) 임명동의안

대법관(안대희) 임명동의안

대법관(이흥훈) 임명동의안

대법관(전수안) 임명동의안

(이상 5건 2006. 6. 19 정부 제출)

(이상 5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이상 5건 6월 29일 대법관(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흥훈·전수안)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보고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6. 3. 23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나경원·이계진·임태희·김성조·이명규·김정훈·최연희·이주호·유승민·주호영·강길부·김명주·안상수·엄호성·정두언·이계경·진영·최구식·박형준·박재완·이진구 의원 발의)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6. 6. 14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2건 2006. 2. 17 정부 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

(2006. 4. 7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6. 3. 21 강창일·박기춘·임종인·김태홍·지병문·김재윤·이목희·김우남·심재덕·노현송·원혜영·이인기 의원 발의)

輕犯罪處罰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6. 3. 21 강창일·박기춘·임종인·김태홍·지병문·김재윤·이목희·김우남·심재덕·노현송·원혜영·이인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警察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6. 3. 21 강창일·박기춘·임종인·김태홍·지병문·김재윤·이목희·김우남·심재덕·노현송·원혜영·이인기 의원 발의)

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6. 3. 21 강창일·박기춘·임종인·김태홍·지병문·김재윤·이목희·김우남·심재덕·노현송·원혜영·이인기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6. 3. 21 강창일·박기춘·임종인·김태홍·지병문·김재윤·이목희·김우남·심재덕·노현송·원혜영·이인기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5건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2. 9 정부 제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

의)

(2005. 12. 12 김정훈 · 엄호성 · 유승민 · 윤건영 · 박세환 · 김기현 · 임해규 · 이해훈 · 박형준 · 박재완 · 이인기 · 이근식 · 고조홍 · 최구식 · 이계경 · 전여옥 · 안상수 · 고경화 · 이성권 · 이재오 · 신국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2004. 6. 28 김영숙 · 임인배 · 박혁규 · 김성조 · 배일도 · 허천 · 공성진 · 김문수 · 박계동 · 이재오 · 엄호성 · 박순자 · 김무성 · 김선미 · 홍준표 · 이상배 · 황우여 · 이계진 · 박명광 · 홍문표 · 김애실 · 임태희 · 황진하 · 안명옥 · 김병호 · 조경태 · 김형주 · 진수희 · 안경률 · 오제세 · 노현송 · 정병국 · 김태환 · 이상락 · 심재철 의원 발의)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2004. 8. 3 강혜숙 · 정성호 · 노영민 · 노웅래 · 신중식 · 이정일 · 김원웅 · 유재건 · 이근식 · 오제세 · 정청래 · 김진표 · 선병렬 · 김춘진 · 김효석 · 윤원호 · 안민석 · 민병두 · 우윤근 · 장향숙 · 장영달 · 김희선 · 홍미영 의원 발의)

學校給食法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2004. 8. 18 정장선 · 김낙순 · 김영주 · 김영춘 · 김재홍 · 김태년 · 김태홍 · 김희선 · 노영민 · 노웅래 · 노현송 · 문석호 · 문학진 · 박기춘 · 박홍수 · 서갑원 · 송영길 · 신중식 · 심재덕 · 안민석 · 안병엽 · 안영근 · 양형일 · 염동연 · 오시덕 · 오영식 · 오제세 · 우제창 · 우제항 · 이상경 · 이원영 · 이종걸 · 이철우 · 임종석 · 장경수 · 장복심 · 정청래 · 제종길 · 조배숙 · 조정식 · 최규성 · 최용규 의원 발의)

學校給食法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4. 9. 30 최순영 · 천영세 · 단병호 · 현애자 · 이영순 · 심상정 · 노회찬 · 권영길 · 조승수 · 강기갑 · 이원영 · 신중식 · 심재덕 · 이상락 · 홍창선 · 정두언 · 김태년 · 이상경 · 홍미영 · 김애실 · 배일도 · 오제세 · 임종인 · 손봉숙 · 이목희 · 이시종 · 문학진 · 오영식 · 이미경 · 이화영 · 한명숙 · 우윤근 의원 발의)

學校給食法改正法律案

(2004. 10. 27 정부 제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2004. 11. 26 복기왕 · 지병문 · 구노희 · 백원우 · 유기홍 · 이인영 · 조배숙 · 정봉주 · 김기

석 · 최재성 · 강기정 · 김부겸 · 김성곤 · 김원웅 · 김진표 · 김춘진 · 김태년 · 노영민 · 문석호 · 문학진 · 박기춘 · 박순자 · 박찬석 · 송영길 · 신국환 · 신중식 · 안민석 · 양승조 · 양형일 · 엄호성 · 염동연 · 원혜영 · 이상호 · 오시덕 · 오영식 · 오제세 · 유승희 · 이경숙 · 이기우 · 이미경 · 이상락 · 이원영 · 이철우 · 이호웅 · 임종석 · 임채정 · 제종길 · 주승용 · 조경태 · 최용규 · 최성 · 한병도 · 한명숙 의원 발의)

(이상 6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교육위원장 보고

傳統寺刹保存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06. 2. 10 최재성 · 우제항 · 안경률 · 엄호성 · 이해봉 · 정병국 · 박기춘 · 정봉주 · 최성 · 이종걸 · 김현미 · 임종석 · 이근식 · 이시종 · 백원우 · 김재윤 · 신중식 의원 발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

(2006. 6. 20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1리 200-3 이현시 외 2711인으로부터 이인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 2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인천 남동공단 일반폐기물 소각로시설 이전 및 백지화 요구에 관한 청원

(2006. 6. 26 인천 남동구 논현동 563-3 논현주공아파트 211-1703 정해훈 외 3만 8318인으로부터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2006. 6. 26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1501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박종순 외 136만 816인으로부터 이균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보건진료원 거주지역 확대에 관한 청원

(2006. 6. 28 강원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206-1 이정순 외 12인으로부터 조일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6. 6. 29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

회복지회관 401호 황용규로부터 유필우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6. 6. 29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대표 박상중으로부터 이영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견서 제출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문

(2006. 6. 1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제출)

○추천의뢰서 제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재선출 의뢰

(2006. 6. 29 대통령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혈액수급대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6. 6. 22 정부 제출)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6. 6. 27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2004회계연도 결산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2006. 6. 1 감사원장 제출)

공적자금운용 현황보고서

(2006. 6. 7 정부 제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

(2006. 6. 13 감사원장 제출)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05년 추진실적 및 '06년 시행계획

(2006. 6. 22 정부 제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2005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2006. 29 정부 제출)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